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분 알림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7. 30.

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알림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, 제29조제1항제6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불능사유	주소
				예정된 처분의 제목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1	경 일○	59.03.15.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	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	○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상담일자에 방문하지 않음. ○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 통지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 제출하지 않음.	○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○ 처분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	서울 광진구 (이하생략)

4. 공고기간: 2026.7.31. ~ 2026.8.14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성동광진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김현진(Tel. 02-2047-995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